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제2조제1항제1호 에”를 “제2조제1항제1호에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“바닥충격음 차단구조”란 「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바닥구조를 말한다.

5. “사업주체”란 「주택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.

제4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 결과 확인 및 기준 미달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

제6조제2항제3호 중 “환경부”를 “기후에너지환경부”로 한다.

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,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검사 등) ① 구청장은 「주택법」 제41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제출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(이하 “성능검사”라 한다)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「주택법」 제41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,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사업주체가 제출한 조치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사업주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고지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	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공동주택”이란 「공동주택 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. 2.·3. (생 략) <신 설>	제2조(정의) ----------. 1. ---------- 제2조제1항제1호에 ----------. 2.·3. (현행과 같음) 4. “바닥충격음 차단구조”란 「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바닥구조를 말한다.

<신 설>	5. “사업주체”란 「주택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.
제4조(추진계획의 수립) ①(생 략)	제4조(추진계획의 수립) ①(현행과 같음)
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② -----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4.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 결과 확인 및 기준 미달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
4. (생 략)	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제6조(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·운영) ① (생 략)	제6조(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·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	② ----------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절차 안내	3. 기후에너지환경부----------
4. ~ 6. (생 략)	4. ~ 6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8조(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검사 등) ① 구청장은 「주택법」 제41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제출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

	(이하 “성능검사”라 한다)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.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「주택법」 제41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,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.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사업주체가 제출한 조치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. ④ 구청장은 사업주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고지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.
제8조·제9조 (생 략)	제9조·제10조 (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)

관 계 법 령

□ 「주택법」

제2조(정의) 1. ~ 9. 생략

10. “사업주체”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.

가. 국가 · 지방자치단체

나.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

다.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

라.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

제41조의2(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하기 위하여 성능검사의 기준(이하 이 조에서 “성능검사기준”이라 한다)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능을 검사하는 기관(이하 “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”이라 한다)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.

③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, 자료 제출 및 서류 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4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”은 “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”으로, “인정업무”는 “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업무”로 본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⑤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기준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(이하 이 조에서 “성능검사”라 한다)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⑥ 사용검사권자는 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,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.

⑦ 제6항에 따라 조치를 권고받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⑧ 사업주체는 제5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성능검사 결과 및 제7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.

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 저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성능검사 결과 및 제7항에 따라 제출된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⑩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은 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매년 우수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.

⑪ 성능검사의 방법, 성능검사 결과의 제출, 성능검사에 드는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제60조의10(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 방법 등) ① 법 제41조의2 제5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(이하 “성능검사”라 한다)를 받으려는 사업주체는 건설하는 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시공이 완료된 후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장에게 성능검사를 신청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주택 각 세대의 평면유형(平面類型), 면적 및 층수 등을 고려하여 구분한 세대 단위별로 성능검사를 실시할 세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성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.

③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성능검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사업주체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.

④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사업주체가 요청하면 제3항에 따라 성능검사 결과를 통보할 때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(이하 이 조 및 제60조의12에서 “사용검사권자”라 한다)에게도 이를 통보할 수 있다. 이 경우 법 제41조의2제5항에

따라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성능검사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검사 대상 세대 수의 산정 비율 등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60조의12(사업주체에 대한 권고) ① 사용검사권자는 법 제41조의2제6항에 따라 제14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량충격음 또는 중량충격음이 49데시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,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.

② 사용검사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로 해야 한다.

1. 권고의 내용 및 이유
2.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기한

③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주체는 권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기술적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검사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④ 법 제41조의2제7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제2항제2호의 조치기한이 지난 날부터 5일을 말한다.

□「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」

제2조(용어의 정의) 1. “바닥충격음 차단구조“란 이 기준에 따라 실시된 바닥충격음 성능시험의 결과로부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(이하 “인정기관“이라 한다)의 장이 차단구조의 성능을 확인하여 인정한 바닥구조를 말한다.

2. ~ 16. 생략